

수수료(제33조제1항 관련)

| 조정목적의 값        | 수수료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1억원 미만         | 10,000원  |
|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| 20,000원  |
|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| 30,000원  |
|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| 50,000원  |
| 10억원 이상        | 100,000원 |

비고

※ 조정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.